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02호 2025. 4. 3.(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제2681호)
-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682호)
- 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제2683호)
-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684호)
- 예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685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81호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1. 예천군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예천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천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예천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예천군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그 밖에 예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체

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안 제5조)

-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 매년 수립·시행
- 목표, 기본방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재해 예방·감소대책, 산업안전보건 교육·홍보, 예산 등 포함하여 수립함

다.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 사업장 지도 실시
- 정책 개발·연구 실시
-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 수행
- 산업재해 예방 교육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82호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원대상”을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신청일 현재”를 “신청일 현재 연속으로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를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 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자”로 한다.

제5조 중 “가발구입비의 90%를”을 “가발구입비를”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신청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직전 회계연도에 구입한 가발비까지 가능하다.
- ④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암 진단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증빙자료, 통장사본이며 그 외 보건복지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에 의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병코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신청인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신청내용	총구입비		신청금액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예천군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서식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주민등록초본
2. 암 진단서
3. 의사소견서(암 치료 과정에 의한 가발이 필요하다는 내용 필수)
4.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가무원/보호자용) : 별지 7 및 7의1
5. 가발구입비 영수증
6. 통장사본

◇제정이유

-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치료 참여를 돕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대상에서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자로 기타 조건(지원대상 조건)을 삭제하여 지원 범위 확대

나. 가발구입비 지원내용 확대(안 제5조)

- 현행 : 가발구입비의 90%, 최대 50만원
- 개정 : 가발구입비 전액 지원(100%), 최대 100만원

다. 지원확대에 따른 추가사항(안 제6조 및 별지)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83호

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예천군이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예천군 이외의 자가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

으로 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단계별 사용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안 제6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84호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
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
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④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범위를 신설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신설(안 제7조)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근거
 - 지역봉사지도원 업무
 - 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85호

예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예천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의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예천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 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2.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8조(보조금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금전과 그 밖에 재산을 출연받거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

여 예천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 각 1명을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문화원 사무국장, 예천군 문화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명, 예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하여 문화원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이 운용 및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예천군 출연기금이 조성될 시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원한 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을 예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 및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을 제6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기금 및 보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및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 서류 및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문화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예천군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정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 및 문화원장의 책무(안 제3조)

-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문화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

다.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안 제5조 ~ 제7조)

- 사업보조금 용도 :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향토자료 포함)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등
- 운영보조금 용도 :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등

라. 기금의 조성(안 제9조)

-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금전과 그 밖에 재산을 출연받거나 기금 조성

마.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안 제10조 ~ 제11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기금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바. 기금의 운용 및 결산(안 제12조 ~ 제14조)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고, 독립된 회계로 관리
-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사. 회계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안 제17조 ~ 제18조)

-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기금 및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
- 기금 및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무 검사 및 개선 사항 시정 권고